

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(고동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24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10.

발 의 자 : 고동진 · 최수진 · 박정훈
이달희 · 박덕흠 · 권성동
윤한홍 · 김성원 · 김용태
서범수 · 김위상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금고의 법정적립금은 대손금 상각 또는 해산 시로 제한하고 있어, 손실금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협·수협·신협과 차이가 있음.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, 손실금 과다로 배당이 장기간 불가능해져 출자금과 예금이 감소하고,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음. 또한, 유사기관과 제무제표 비교 곤란으로 회계유용성이 저하될 수 있음.

이에 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하고, 사업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이전 사업연도에서 이월된 잉여금, 특별적립금, 임의적립금, 법정적립금 및 회전출자금의 순으로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여 재무건정성과 회계유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35조).

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
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제1항 중 “매 사업연도마다”를 “사업연도마다”로, “법정 적립금”을 “법정적립금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결손의 보전(補填)”을 “손실금의 보전”으로, “매 사업연도마다”를 “사업연도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특별적립금, 임의적립금”을 “미처분이월금, 특별적립금, 임의적립금, 법정적립금, 회전출자금”으로 한다.

② 금고는 손실금의 보전(補填)이나 해산(합병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)의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지 못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5조(적립금과 손익금의 처리)	제35조(적립금과 손익금의 처리)
① 금고는 매 사업연도마다 자기자본(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5 이상을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	① ----- <u>사업연도마다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<u>법정적립금</u> ----- -----.
② 금고는 대손금(貸損金)의 상각(償却)이나 해산의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사용하거나 배당에 충당하지 못한다.	② 금고는 손실금의 보전(補填)이나 해산의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사용하거나 배당에 충당하지 못한다.
③ 금고는 결손의 보전(補填)과 불가항력에 의한 회계사고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으로서 매 사업연도마다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특별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	③ ----- <u>손실금의 보전</u> ----- ----- ----- ---- <u>사업연도마다</u> ----- ----- -----.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⑤ 금고는 사업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	⑤ ----- ----- <u>미처</u>

<u>적립금, 임의적립금의</u> 순으로 이를 보전하되, 잔여손실금이 있으면 이를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한다. ⑥ ~ ⑩ (생략)	<u>분이월금, 특별적립금, 임의적 립금, 법정적립금, 회전출자금-</u> ----- -----. ⑥ ~ ⑩ (현행과 같음)
---	--